

No. 8

행정 명령

주 계약에 소수민족 및 여성 기업 참여에 대한 장벽 제거

뉴욕주는 소수민족 일원 및 여성,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계약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고,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이 주 계약에 접근할 기회를 막는 장벽을 근절하기 위하여 행정법 15-A 조항을 제정하였으므로;

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의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뉴욕주의 새로운 법에도 불구하고, 2010년 주 전체의 불균형 연구는 (1) 뉴욕주의 계약 기회에 대해 가능하고 또 자격이 되는 소수민족 및 여성 기업의 수와 (2) 그와 같은 기업에게 주어진 계약 수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므로;

2010년 15-A 조항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되었으며,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 주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결정적이므로;

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의 뉴욕주 계약 기회에 대한 접근을 악화시켜 온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뉴욕주가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것은 강력한 공공 중요성에서이므로; 그리고

이 검토는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의 주 계약 참여 증가 및 차별없는 평등 고용 기회 제공에 맞추어져야 하므로;

이제, 그러므로, 나, Andrew M. Cuomo 뉴욕 주지사는, 헌법 및 뉴욕주 법에 의해 내게 확립된 권한에 의해, 다음의 사항을 명령합니다:

A. 정의

여기에서 사용된대로, 다음의 용어는 다음의 뜻이 적용됩니다:

1. “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 (Minority and Women-Owned Business Enterprise 또는 M/WBE)”은 행정법 § 310에 나온대로 "소수민족이 소유한 기업" 및 "여성이 소유한 기업"을 뜻합니다.

2. “공공기관” 또는 “당국” (Public authority 또는 authority)은 뉴욕주 하에 새로 만들어졌거나 존재하는 공공 권력 단체 또는 공공 비영리 단체를 뜻하며, 주지사에 의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일원이 임명받아 뉴욕주 공무원의 수완으로 일합니다. 이는 특정 공공기관 또는 공공 비영리 협회의 자회사를 포함하는 국제 당국 또는 공공 비영리 기관은 제외합니다.

3. “SAGE 위원회”는 2011년의 행정 명령 제 4부에서 창출되어 주정부의 기관구조를 재설계하는 역할이 맡겨진 지출 및 정부 효율성 위원회 (Spending and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)를 뜻합니다.

4. “주 기관 (State agency 또는 agency)”은 모든 주 대행기관, 관공부, 부서, 국, 위원회, 또는 협의회 등을 뜻합니다.

5. “주 직책자 및 직원 (State officer and employee)”은 공무원법 섹션 73에 명시된 뜻을 가집니다.

B. M/WBE 팀

1. 이로써 주지사에게 지도를 제공하고 또 조언을 할 M/WBE 팀 (이하 “팀”)이 설립되었습니다.

2. 주지사는 팀의 투표 구성원을 30명까지 지명할 수 있습니다. 팀의 구성원은 다음을 포함합니다: 연관된 경험이 있는 주 직책자 또는 직원; 뉴욕주 입법부 회원; 주 학원기관 일원; 그리고 공급자 다양성 계약, 다양성 및 포용 관행 및 다양성 프로그램 인력 등에 경험있는 이해 관계자.

3. 공석은 주지사에게 의해 채워지며, 주지사는 팀에 필요한대로 투표인사 및 비투표인사를 추가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. 팀의 일원들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.

4. 주지사는 팀의 구성원 중에서 팀장을 지명할 것입니다.

5. 임명된 팀원의 대부분은 정원수를 이루게 되고, 모든 팀의 추천은 주지사의 임명을 받은 총 회원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6. 팀은 크고 다양한 종류의 기관,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참여하고 얻도록 해야 합니다.

C. 팀과의 협력

1. 뉴욕주의 모든 기관 또는 당국은 팀에 뉴욕주 시설 사용 등을 포함하여 이 행정 명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조력 및 협력을 제공해야 합니다.

2. 팀의 업무 이행에 필요한 직원 지원은 기관 및 당국을 통해 공급될 것입니다 (이는 그와 같은 당국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).

3. 최고 다양성 책임자는 팀과 기관들 사이의 자료 및 정보 교환을 가능케 하는 연락자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.

D. 의무 및 목적

1. 팀은 2010년도 불균형 연구를 검토하고, 또한 개별 기관 성과 및 계약 관행에 대하여 주기관에서 만들고 최고 다양성 책임자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검토할 것입니다.

2. 팀은 행정실 (Executive Chamber),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, 그리고 SAGE 위원회와 협력하여 그 외 연관된 기업들과의 공동작업 기회를 확인할 것입니다.

3. 팀장은 이해 관계자에게 팀의 목적,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, 및 그러한 참여 방법 및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.

4. 팀장은 이해관계자 및 그 외 연관된 관심있는 이들의 제안 및 추천안 제출 한도를 제공할 것입니다.

5. 팀의 검토 및 추천안은 M/WBE의 다음의 주 계약을 포함하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 기회 참여에 대한 기존의 장벽에 대해 언급해야 합니다:

- a. M/WBE 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 지도력의 헌신;

- b. 정보 접근;
- c. M/WBE 참여를 고려한 특정 계약;
- d. 조력 및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;
- e. 주 계약 확보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신용 및 유대관계의 방해물; 그리고
- f. 계약 기간 동안 일관성 없고 드문 감독 및 이행.

6. 팀은 주 기관이 행정법15-A 조항에 대한 2010 개정안을 시행하는 방법이나 그 시행에 따른 모든 문제점, 현재 법정 과 M/WBE 계약을 주관하는 일반 제도와의 차이점 또한 검토할 것입니다.

7. 팀은 늦어도 2011년 3월 1일부터 그 업무를 시작할 것입니다. 2011년 5월 1일 또는 그 전에, 팀은 업무 계획을 확인하고 계획 시행을 위해 행정실과 협력할 것입니다.

8. 팀은 2012년 6월 1일 또는 그 전에 모든 업무 계획을 완전히 시행할 것입니다. 그런 이후, 팀은 그 업무를 종결하고 모든 책임과 의무로부터 해산될 것입니다.

이천 십일년 이월 칠일 Albany시에서 내게 주어진

권한 및 주 인사의 권한에 의함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실장